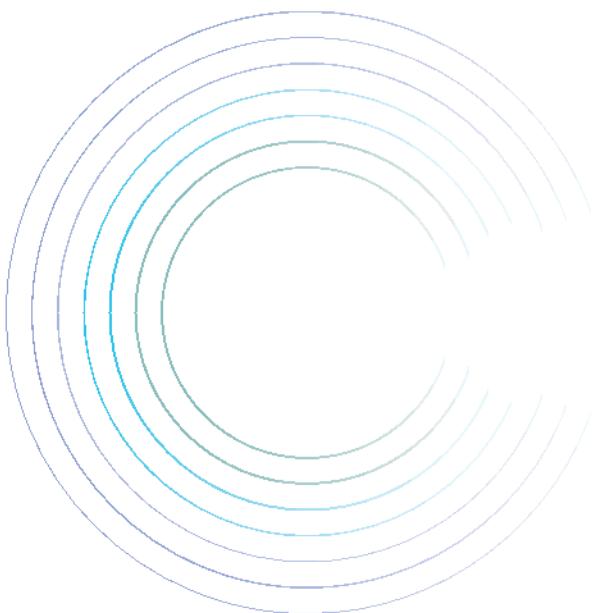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추진 방안

최성은 외



현안연구 2023-09
2023. 08. 31.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추진 방안

최성은 외



연구책임 • 최성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안용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김정숙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지원 • 안제현 / 세종연구실 조사원

현안연구 2023-09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추진 방안

발행인 김영진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홈페이지: www.dsi.re.kr

인쇄처 국보문화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요 약	5
I.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필요성	17
1.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7
2. 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 및 지원 시스템 강화 필요	18
3. 연구의 목적	20
II.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 분석	21
1.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추진 개요	21
2.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세부 추진 현황 분석	29
3. 정책환경 진단	37
III. 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사례 검토	41
1. 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현황	41
2.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사례	42
3.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성과평가 사례 종합	54
IV.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57
1.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개요	57
2. 예산지원 방식에 관한 정책 제안	64
3. 그 외 정책 제안	67
참고문헌	69

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의 ①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②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③ 세종시의 성과평가 모델(안)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추진 타당성 논리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 결과,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는 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 수행, 그리고 환류 과정 및 컨설팅,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이 전문성과 객관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의 위탁 수행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됨. 이 경우, 예산 지원 방식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출연금 지급, 용역계약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감시·감독 체계 필요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문제점 대두
 - 민간위탁 사무별 성과평가 방식이 상이함. 수탁기관 측에서도 성과평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전문적으로 진행해 줄 외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 연구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그동안의 ①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②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③ 세종시의 성과평가 모델(안)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추진 타당성 논리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둘러싼 정책환경 진단 결과
-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은 단층제 행정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무 추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때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큰 사무이거나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의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 사무 등에 민간위탁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단층제 행정체계가 가진 세종시 행정조직의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사무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직·인력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함
- 2023년 1월 기준,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

위원회' 예산에 그침. 향후 조직담당 부서가 종합적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함

- 조직·인력이 필요한 부분 예시 : ①현재 세종시 정책기획관 조직담당 부서 담당자를 증원하는 방식, ②외부 공공기관 대행을 통해 평가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조직·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이 가능함
-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외부 공공기관 대행 평가체계 운영 시 예산(출연금 등) 또는 용역계약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함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제안

[성과평가 방안 제안 사항]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공공기관 위탁 (지자체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 수행까지 종합적 관리 가능• 통합관리로 평가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체계적 평가지표 마련, 다양한 평가자 인력풀 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의 지도·감독 의무 및 책임성 저하 우려• 세종시 위탁사무의 대부분은 복지 분야 및 시설 유지·관리 사무로 평가 한계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시 공공기관 대행위탁의 필요성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측면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추진 시, 성과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더불어, 해당 사업(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평가자 구성과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이 부여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온정적 판단 등 비공식적 관계의 개입)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공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할 경우, 표준화된 평가체계 마련이 가능함
- 민간위탁 평가체계는 투입(추진체계), 변환(평가의 주체, 목적, 대상, 내용, 절차, 방법, 시기), 산출(서비스 및 환류)을 의미함(강병준 외, 2015:232).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위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
- 사업부서별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결과 해석이 상이 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

- 민간위탁의 추진성과 역시 정부의 책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존재함. 따라서 공공 기관 대행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면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되더라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높은 경쟁 등 평가 및 선정결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김용동, 2011)
- 특히 기존 수탁기관(위탁업체)과 담당 공무원(부서)과의 유대관계 고착화, 기술적·전문성의 독점 등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는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유리한 상황으로 연결되어 계약방식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김동욱, 2016)
- 이로 인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관 및 사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공공 기관 대행을 통해 성과평가 추진 시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춘 평가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전문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음
- 민간위탁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계약관리가 중요하며,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강병준 외, 2015:230). 이는 해당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유지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사항임
- 현재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 하며, 그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
-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하고 단순히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대행의 적절성, 적합성

○ 공공기관 위탁 기관 적합도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무의 다양성,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적합한 기관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가 풀 확보 가능 : 대전세종연구원은 유일한 세종시의 종합연구 수행이 가능한 인력 구성을 갖고 있음(높은 전문성).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 풀 운영에 필요한 내·외부 자원 동원력이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금까지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분야 중 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연계에 필요한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체계를 보유할 경우, 특정 분야에 집중도에 따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함
-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 담보**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경우,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직접적 사업 수행을 추진하지 않는 유일한 시정연구 기관임. 이는 곧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와 지속성 유지**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 실은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시정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연구기관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연구 지원 기능)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춘 기관이며, 시와의 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도 가능함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제1안> 추진의 타당성 : 법·제도적 근거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법·제도적 근거로 함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성과 평가를 위탁 만료일 120일 전에 실시해야 함을 규정함
 - 또한 동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따라서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중 공공기관 위탁 대행 방식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추진이 타당함

<제1안> 추진 대상 :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우선 적용

- 세종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무로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로 한정함
- 이들 민간위탁 사무 중 성과평가 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연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총 8건 으로 전체의 약 17.8%를 차지하며 모두 개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을 수행하고 있음

〈제1안〉 추진 기간: 1년간 3~4회로 나누어 성과평가 진행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주기는 계약 유형인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 기간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각 민간위탁 사무마다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년간 3~4회로 나누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제1안〉 평가 내용: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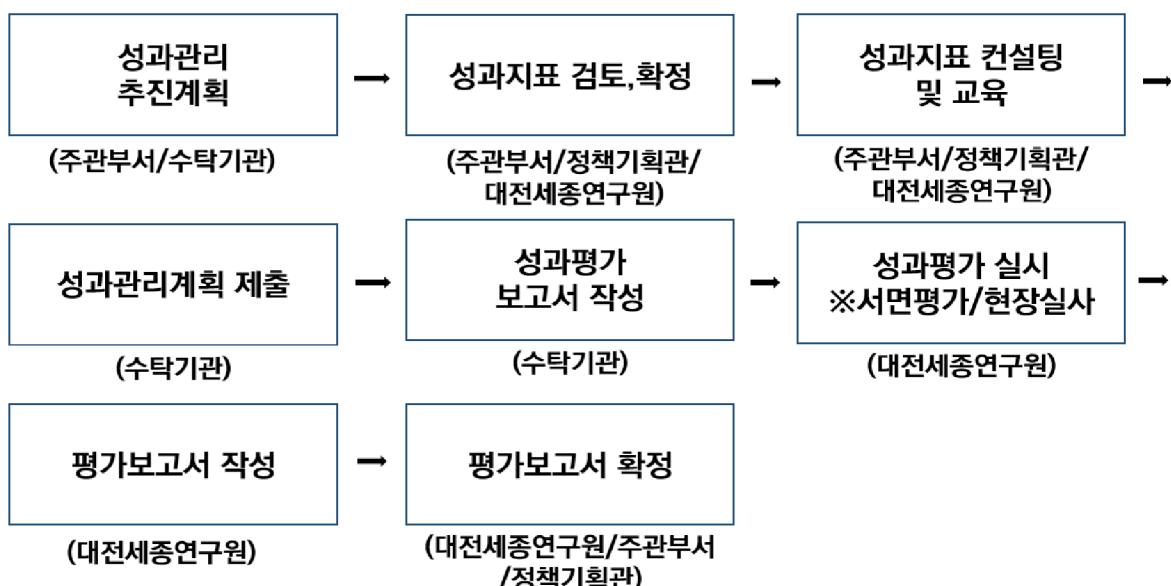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내용은 크게 공통분야, 개별분야, 사용자 만족도 평가, 감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함
- 공통분야는 민간위탁 사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과 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여부 등을 평가함
 - 개별분야는 민간위탁 사무 유형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프로그램 수행 횟수, 수혜자 수, 등록 건 수 등 정량적으로 산출가능한 정량지표와 서비스 질적 수준,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정성지표로 구성함
 - 개별분야는 향후 수탁기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사전컨설팅 및 협의를 통해 사무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적용함
- 사용자 만족도는 공공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무의 경우 시민들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시함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환류를 통해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개요(안)]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무 (단, 필요할 경우 종합성과평가 실시 가능)
평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기간 내 1회(만료 120일 이전) *선정/재계약 여부에 따라 평가시기 차등화하여 총 3회 실시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분야(배점 : 60) • 개별분야(배점 : 40) *사용자 만족도 평가(개별분야 내에서 해당 기관에만 적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 추진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주요 비위행위 발생 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 평가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활용 • *재계약 여부 및 위탁 기간 등의 인센티브 ·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추진부서(사업부서) 담당자, 수탁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함 • 평가 결과와 더불어 컨설팅과 교육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추진 주체별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지표 검토/컨설팅/성과평가 실시 등을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함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 제안]

예산지원 방식에 관한 정책 제안

○ 여기에서는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공공기관 대행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실행 가능한 예산지원 방식 유형을 제안해보고자 함

[위탁 운영에 따른 다양한 예산지원 방식 비교]

구분	위탁·대행 (공공위탁)	용역계약	출연금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법적 근거	단체장 판단하에 필요시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조례상 보조 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근거 조례*	불필요 (향후,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불필요	불필요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필요	필요
의회 동의	불필요	불필요	필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 동의와 함께 진행 가능)	불필요	필요 (재위탁, 위탁갱신 중 3억 원 이하 사무 제외)
선정 심의	부서 협의하에 진행 가능함. 선정심의 불필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불필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공모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기간	-	필요에 따름	-	3년	3년 이내

* 센터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의 필요 여부를 의미(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의 필요 여부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 김기욱 외(2023) 재구성

[예산지원 방식의 적합성, 지속성, 내부 구성원 참여도(예상),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사례]

구 분	적합성	지속성	내부 구성원* 참여도(예상)	운영 사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수행 사례
위탁·대행 (공공위탁)	○	○	△	×	×
출연금	○	○	△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도시안전연구센터
용역계약	○	△	○	○	여성가족부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 사업(연구용역), 기획재정부 대전세종경济교육센터 위탁운영사업
지방보조금	×	×	×	○	세종학진흥위탁사업 (2023년)
민간위탁	×	×	×	×	×

* 컨설팅 참여를 위한 내부 연구위원 및 전문연구원을 의미함(연구책임 또는 센터책임 제외). 겸직 방식으로 참여도를 예상한 결과임

- 먼저, 다양한 방식의 위탁 운영 예산지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공위탁·대행 방식
 -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해당하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은 공공위탁 및 대행 기관으로 지정·운영이 가능함
 - 공공위탁·대행 방식은 단체장의 판단하에 필요시 추진 가능하며, 부서 협의하에 진행이 가능하여 행정의 신속성, 적시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위탁 및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부재하여 관련 운영 지침 및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단체장의 요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의의 과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출연금 방식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출연금에 성과평가 대행업무 관련 출연금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적합성 높음. 추후 조직(센터)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또는 정책연구)가 필요함
 -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내부 구성원(컨설팅을 위한 겸직 구성원을 의미함)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 (예산 특징) 출연금방식의 경우, 실행예산은 동일함. 센터장 보직자 외 내부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불가한 상황임
- 용역계약 방식
 - 용역계약 방식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무 종합평가에 대한 단기적 추진 방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됨. 다만, 시 편성예산금액과 사업실행 예산이 크게 차이(차감)가 나므로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용역예산을 사업실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편성해야 함
 - (예산의 특징) 시 용역수행을 위한 예산편성금액과 실행예산이 상이함. 일차적으로 시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일부 차감(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에도 불구하고)됨. 이차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용역과제 내부 전입금(간접비 귀속) 지침에 따라 계약 금액에서 대부분 30% 내외로 감액됨. 따라서 용역계약금액에 대한 예산편성 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함
 - (예산의 특징) 한편, 용역계약방식을 취할 경우, 용역과제에 포함되는 내부 구성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 여러 예산지원 방식 중 내부 구성원 참여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재정적 인센티브 측면) 형태임

○ 지방보조금 방식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의 경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비영리, 공익성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예: 전통문화 진흥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주로 활용되는 지방보조금 방식은 추진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방식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의 경우,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간위탁 방식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예산 지원 방식 검토 시사점)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의뢰할 경우, 공공위탁·대행방식, 출연금 방식과 용역계약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건의

컨설팅, 교육에 관한 사항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성과평가 대행 업무 위탁 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은 컨설팅 및 교육 업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있어서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집단은 다음과 같음
 - 시 사업담당 부서
 - 수탁기관
 - 수탁 예비(희망) 기관
 - 성과평가 참여 전문가(세종연구실 내부 연구자, 관내·외 전문가 집단)

성과평가 업무 대행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 참여의 지속성을 위한 과제
- 내·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내부)와 비용부담(외부)을 준비해야 함(평가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참여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민간위탁 사무 평가는 전문성을 담보로한 연구 활동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이므로 대전세종연구원의 내부 지침(연구원 성과평가)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책임자 외의 내부인력 활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방식의 경우 또한 내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 구조를 조정하여 기여도 만큼의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간의 적극적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안정적인 행정지원 인력

- 성과평가의 지속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전문평가단 풀 모집, 운영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행정지원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함
 - 현재, 세종연구실 내부 인력(연구직 및 전문연구원, 관리직)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아님
- 또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를 통한 표준화된 성과평가 체계를 위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석사급 이상의 행정 지원 인력이 필요함**
 - 예상 필요 인력 : 센터장 1명(내부 연구위원), 박사급 초빙연구원 1명(성과평가계획 지원, 평가결과 분석, 지표 관리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 석사급 전문연구원 1명 (컨설팅, 교육, 평가단 인력관리)
-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이상)의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상기 언급된 예산지원 방식 중 ‘공공위탁·대행 및 출연금 방식’이 가장 적합함

③ 성과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환류를 위한 정보 축적과 환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 성과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환류, 수탁기관의 역량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사업부서별 성과평가 현장에서는 수탁기관별 증빙자료 관리 방식이 다양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평가자로 하여금 원활한 평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향후,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용 증빙서류가 통합정보시스템 형태로 제공될 경우, 외부 평가단들의 서류 심사 진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장기적 과제로서 정보축적과 환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바임

④ 중앙부처 차원의 성과평가 별도 시행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중복, 중첩의 가능성 검토해야 함

- 일부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피 평가자의 경우 평가지표 자체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음
- 중앙부처 차원의 성과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도 문제 없다는 주장도 나타남

- 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의 성과평가 의도와 방식, 지표는 세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목적성, 구체성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사무별 관련 중앙부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복과 중첩의 가능성이 없음을 평가자 집단에게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음(중복, 중첩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공지할 필요가 있음)

I. 민간위탁 사무 성과 관리의 필요성

1.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

- 단층제 행정체계 세종시 인구 증가 및 도시건설 지속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증가
 - 세종시 출범 시기인 2012년 7월 12건 대비 2023년 1월 기준, 202건(190건 증가)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증가에 대응할 체계적인 감시·감독 체계 필요

-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재계약 증가 추세임. 따라서 선정·재계약 단계의 평가체계(선정·재계약 기준, 평가 방법)를 보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함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민간위탁이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이 중,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의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의 연속적 업무 추진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측면에 있어 장점이 있음. 그러나 재위탁과 같이 공개모집 방식이 아니므로,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의 이점이 반영되지 않아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음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 여건의 중요성)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위탁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업체) 수가 많을수록 서비스 품질경쟁, 가격담합 방지, 비용 최소화가 가능해짐. 이러한 여건이 미흡해질 경우, 서비스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쟁적 공급시장 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움
-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재계약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기관(단체)과의 연속적 업무 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2. 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 및 지원 시스템 강화 필요

2023년 7월 현재,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 개선 노력 : 진행 중

- (전반적 개선 노력 진행 중)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관련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 산하 조직담당부서임. 해당 부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관행적·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및 불공정 사무를 과감히 정비하기 위하여 운영체계(조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 정부 권고사항 반영 등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21.12월)
 -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근로자 고용조건 포함 등
-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1.5)에 따른 고용실태 주기적 점검 실시
 - 재위탁·하도급·파견 금지, 고용유지 노력, 체계적 임금관리 등

-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 추진 중이며, 2023년 8월경 업무처리 지침을 발간할 예정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발간 예정

◆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위탁사무 책임성 및 투명성 개선

- ①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침 전면 개정 추진(‘15년 이후 개정 無)
- ② 신규 위탁 및 재계약시 제기되는 투명성 문제 적극 개선(조례 명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위탁사무 회계감사 시행• 사무 유형별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체계 전면 개편• 실무에 필요한 표준 협약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 절차·서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감축(5→3년), 재계약 횟수 명시•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 신설• 적격자 심의위원 자격요건 명시• 성과평가 결과 공개 강화(홈페이지 등)

- (회계 감사)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화(연 1회)

- 회계감사를 통해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유도,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재계약·재위탁 검토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연간 위탁금 3억원 이상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미만은 부서 수행)

관리체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 2023년 7월 기준, 세종시 조직담당 부서의 대표적인 민간위탁 관리 방식은 사무 유형별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임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의무화’는 그 대표적인 관리 유형에 해당함

- 성과평가 의무화(2023년 1월 1일 이후, 민간위탁 완료 사무 해당)
 - ※ 김현미 의원 5분 발언(‘22.11월) : 실효성 성과지표 마련, 시의회 동의시 평가결과 제출
-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 일부(수탁기관 수익 일부)를 삭감(조치 미이행시)할 수 있도록 지침 구체화(계약 표준안 등)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문제점) 그러나 여전히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위한 변화 노력과 현장 간의 실질적 어려움 공존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첫째, 민간위탁 사무별 성과평가 방식이 상이하고, 수탁기관들도 성과평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종시에서는 위탁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한 후,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방식 및 수준이 개별 민간 위탁 사무마다 편차가 크게 차이남
 - 이는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임. 특히, 개별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담당 부서에서도 성과평가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 어려움
 - 수탁기관마다 성과평가에 대한 정책적 이해도가 상이하여, 1차적으로 각각의 사업 소관 부서가 지시한 성과평가 계획에 대한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둘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전문적으로 진행해 줄 외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체계 벤치마킹 필요) 현재, 세종시 조직담당 부서나 사업 부서, 수탁기관의 자발적 성과평가 진행은 한계가 있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정기적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흐름을 고려한 세종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임
 - (전라북도의 예시) 전라북도(김하영 외, 2019)의 경우, 정기적인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와 예산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도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2019년 평가대상 사무는 총 32건)
 -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시) 2017년까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다가 2018년부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 및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사무 37개를 평가하며 사무별 성과평가 점수와 개선 과제를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2023)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무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을 공통지표와 개별지표에 의거 평가하고 있음

3. 연구의 목적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그동안의 ①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②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③ 세종시의 성과평가 모델(안)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추진 타당성 논리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II.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 분석

1.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추진 개요

1)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특성(총괄)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특성

○ 세종특별자치시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 민간 위탁 사무 건수와 금액 모두 급속하게 증가함

- 민간위탁 사무 건수 : '12년 12건 → '23년 202건(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업 123건, 그 외 79건)

- 민간위탁 사무 총위탁 금액 : '12년 4,034(백만원) → '23년 49,023(백만원)

○ 향후에도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가 예견되므로,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환류체계의 마련이 시급함

- 다수의 민간위탁의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민간위탁의 성과는 계약관리 능력, 행정지원체계, 환류를 통한 성과 확보 방안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김인, 2011; 김주애, 2012; 송근원 외., 2003)

- 현재 세종시에서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민간위탁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작성·배포하는 등 사무의 선정·관리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 통일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옴

- 그러나 민간위탁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이며, 현재 민간위탁 사무 담당은 사무관과 주무관이 각 1명씩 맡고 있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며, 세종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는 다양한 기능, 특성, 기간을 포괄함

- (분야별 구분) 경제, 교통, 문화, 보건, 복지, 체육, 환경, 기타의 8가지 분야로 구분

- (사무의 형태 구분) 시설위탁형 또는 사무위탁으로 구분

- (사무 기간 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평가(재위탁, 재계약) 주기를 따름

2)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조직 현황

세종시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생략)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민간위탁 관련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절차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업무 추진 절차

- 세종시 정책기획관 조직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업무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특히, 2023년 상반기 <민간위탁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마련하여 각 실국 관련 부서 및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로 활용하여 사무 선정 및 관리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 통일성, 일관성을 높여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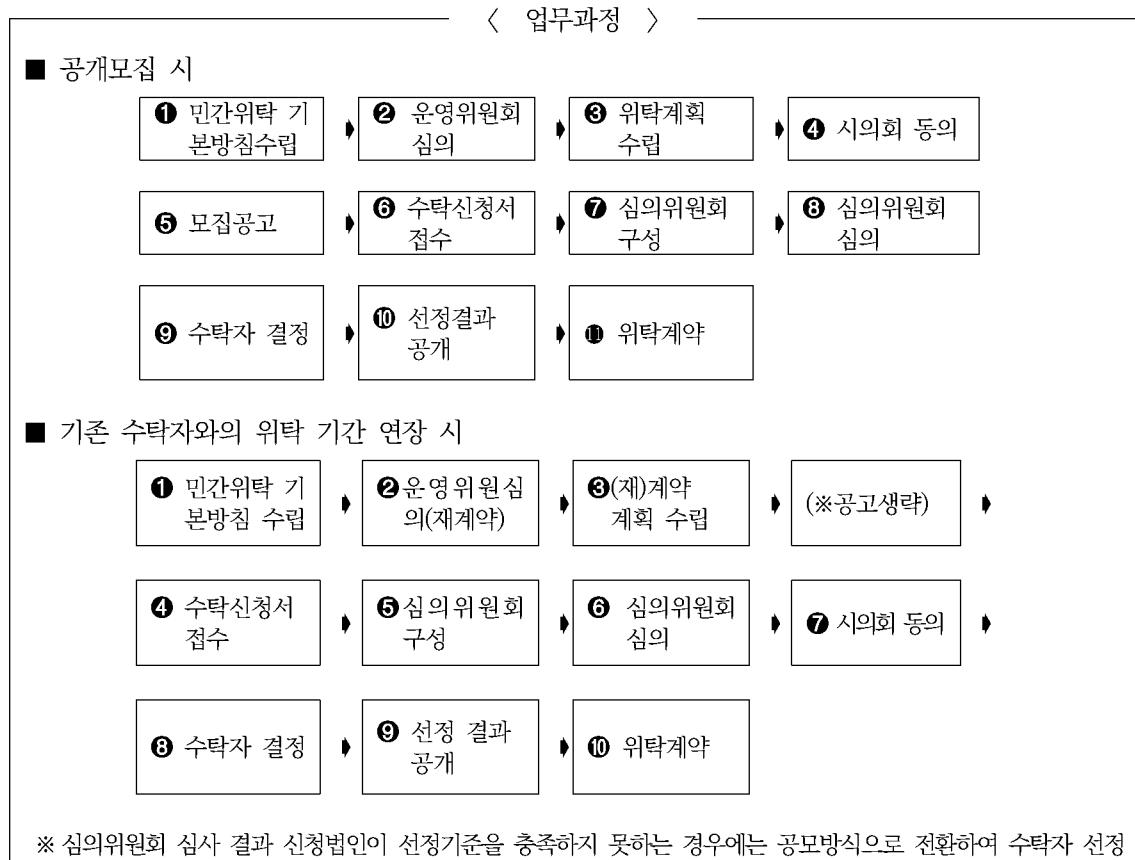
- 세종시 민간위탁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신규/재위탁/재계약에 따라 세부 절차 상 차이가 있으나, 기본 절차는 동일함
- 위탁사무 재계약의 경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우선 실시한 후 시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됨

[표 2-1] 세종시 민간위탁 진행 절차

단계	내용	비고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추진 사전 기초조사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주관부서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민간위탁 내용 확정 - 위탁 기간 결정 - 수탁기관 적정 기구·인력 검토 - 위탁비용 산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적정 예산과목 편성 - 민간위탁 추진계획 상신 	주관부서 ※조직관리팀장 협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신규/재위탁/재계약 적정성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정책기획관
시의회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의결 	주관부서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의결 	주관부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계약 공모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수탁기관 선정 	주관부서
선정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주관부서
위수탁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체결 	주관부서
민간위탁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사무 인계·인수 - 민간위탁 사무 관리 	주관부서

[표 2-2]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업무과정



자료: 세종시 정책기획관 조직담당 부서 내부자료(2023a), <민간위탁 관련 유의사항 안내>

민간위탁 관련 사무의 선정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는 위탁사무를 선정한 때에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용역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
-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재위탁·재계약 절차

- 신규위탁·재위탁*·재계약** 모두 의회동의 절차 필수
 - (신규위탁·재위탁) 운영위(심의) → 의회(동의) → 적격심의위(심의)
 - (재계약) 운영위(심의) → 적격심의위(심의) → 의회(동의)

성과평가 실시

- 위탁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한 후, 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재위탁·재계약 심의와 함께 진행 가능)
 - 경과규정에 따라 '23. 1. 1. 이후 만료되는 사무부터 적용
- ※ 재위탁·재계약시 성과평가(120일 전)와 의회동의(90일 전) 사이에 운영위(+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고려하여 성과평가 진행 주의
- 운영위 안건 제출시 성과평가 관련 내용*도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안건 제출 요청
- * 성과목표·성과지표, 평가방식, 목표설정 근거(이유) 등
- 시의회 동의시 성과평가 실시계획, 성과평가 결과(재위탁·재계약) 필수 포함하여 제출

고용조건 개선 노력

- 수탁기관 대상 고용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운영위 보고(재위탁·재계약 심의와 함께 진행 가능)
- 모집공고 시 평가항목에 고용관리 부분 포함
 -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제출, 협약내용 미이행시 '협약 해지' 가능 등 명시
- 적격자 심의위에서 고용조건 부분도 수탁기관 선정시 반영
- 위·수탁 협약체결 시 근로조건 보호내용을 협약서에 명시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탁단계별 권고사항 준수

공증절차 삭제

- 규정 삭제로 협약서 체결 시 공증절차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 ※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공증절차의 실의 없음

처리상황의 감사(연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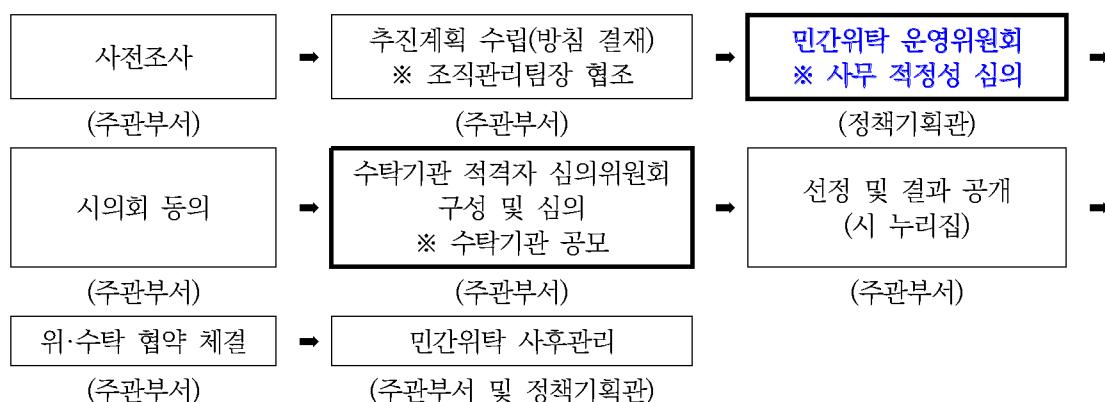
- 위탁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의 처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 가능
- ※ 기존조례 사항이나, 미실시 부서가 다수인 상황으로 주의 필요

4)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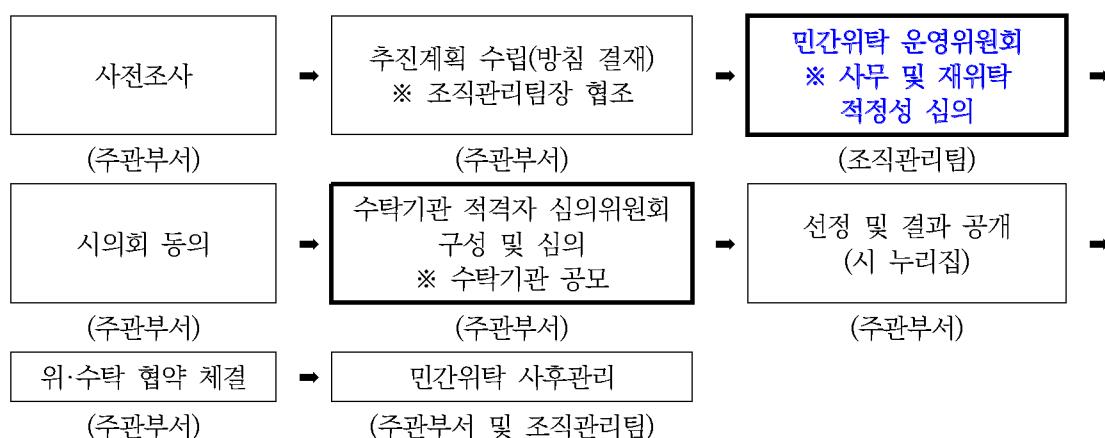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추진절차에 있어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음(세종시 조직담당 내부자료, <세종시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안)>, 2023년 5월 30일자 자료)
 -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에 따른 추진절차가 다소 상이함

[표 2-3] 신규위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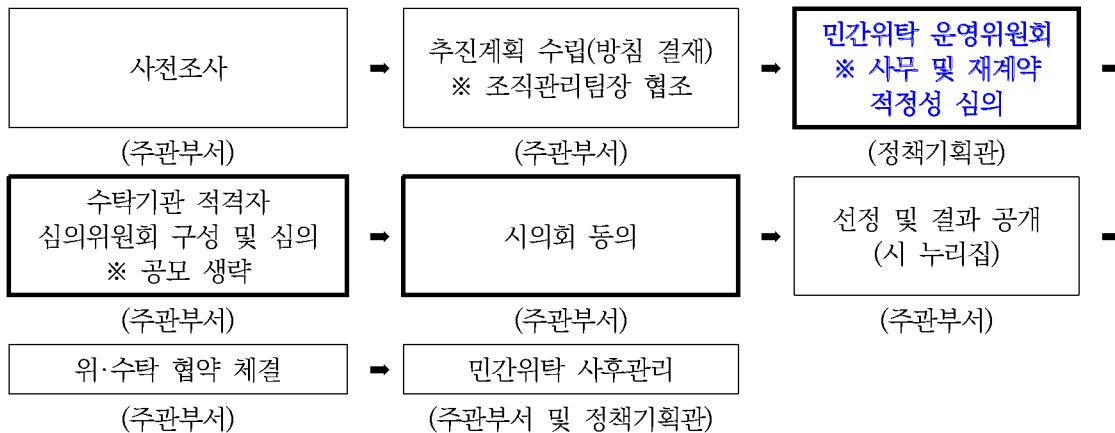
- 재위탁 추진절차는 신규위탁 추진절차와 동일하지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시 민간위탁 사후관리(지도·점검, 성과평과 결과 등)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표 2-4] 재위탁 추진절차



- 재계약 추진절차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뿐만 아니라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

[표 2-5] 재계약 추진 절차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되어 아래의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3년 5월 기준, 제5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음

- (임기) '22. 6. 1. ~ '24. 5. 31.(2년)
- (인원) 9명.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실·국장급 4명), 위촉직 외부 전문가 5명 (교수, 정책연구자, 노무사, 시민대표 등)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12.)<개정, 2021. 12. 1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 12. 10.>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이하 생략)

세종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이력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는 2014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로 서면 심의로 진행됨.
 - 2022년부터 대면으로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있음

[표 2-6] 세종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이력

연도	서면	대면	총 안건수
2014	0	3	16
2015	0	3	16
2016	1	3	22
2017	1	4	35
2018	2	4	24
2019	3	3	30
2020	4	1	33
2021	4	1	24
2022	1	3	35
2023	0	3	10

자료 : 세종시 정책기획관 조직담당 부서 내부자료(2023b),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2.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세부 추진 현황 분석

1) 사무의 기능 분야별 민간위탁 추진 현황 분석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전체 현황

- (연도별 현황) 市 출범 이후 민간위탁 사무 수 증가 추이

[표 2-7] 세종시 연도별 민간위탁 사무 변화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12.7.	2015	2018	2021	2023. 1.
건수(건)	12	36	86	180	202
금액(백만원)	4,034	13,156	29,227	39,845	49,023

- 2012년 7월 기준 12건에서 2023년 1월 기준 202건으로 190건 증가

- (분야별 현황) 202건 중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사무가 1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8] 분야별 총위탁금 현황(2023년 1월 2일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분야	계	경제	교통	문화	체육	보건	복지	환경	기타
건수(건)	202	4	1	3	3	10	165	8	8
금액(백만원)	113,947.8	3,448	6,891	1,747	4,884	11,415	41,707	35,803	8052.8

실국별 민간위탁 사무 분야 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 전체 202건의 민간위탁 사무 중 실국별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 보건복지국이 83.2%(168건)을 차지함

- (실국별 현황) 경제산업국·환경녹지국 각각 7건(3.5%), 건설교통국 6건(3%), 사업소 4건(2%), 자치행정국·직속기관 각각 3건(1.5%), 문화체육관광국 2건(1%), 미래전략본부·시민안전실 각각 1건(0.5%) 순으로 분석됨

[표 2-9] 실국별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어린이집 포함)

(단위: 건, (%))

분야	건설 교통국	경제 산업국	문화체육 관광국	미래전략 본부	보건 복지국	사업소	시민 안전실	자치 행정국	직속기관	환경 녹지국	총합계
경제		3 (75.0) (42.8)					1 (25.0) (33.3)				4 (100.0) (2.0)
교통	1 (100.0) (16.7)										1 (100.0) (0.5)
기타	2 (25.0) (33.3)	2 (25.0) (28.6)		1 (12.5) (100.0)			1 (12.5) (100.0)	2 (25.0) (66.7)			8 (100.0) (4.0)
문화			2 (66.7) (100.0)			1 (33.3) (25.0)					3 (100.0) (1.5)
보건					7 (70.0) (4.2)				3 (30.0) (100.0)		10 (100.0) (5.0)
복지	3 (1.8) (50.0)	1 (0.6) (14.3)			161 (97.6) (95.8)						165 (100.0) (81.7)
체육						2 (66.7) (50.0)				1 (33.3) (14.3)	3 (100.0) (1.5)
환경		1 (12.5) (14.3)				1 (12.5) (25.0)				6 (75.0) (86.7)	8 (100.0) (4.0)
총 합계	6 (3.0) (100.0)	7 (3.5) (100.0)	2 (1.0) (100.0)	1 (0.5) (100.0)	168 (83.2) (100.0)	4 (2.0) (100.0)	1 (0.5) (100.0)	3 (1.5) (100.0)	3 (1.5) (100.0)	7 (3.5) (100.0)	202 (100.0) 100.0)

민간위탁 사무 분야별 총기간별 현황

-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 123건은 모두 총기간이 5년임
-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 158건을 대상으로만 위탁 총기간별 현황을 분석함
 - 3년 미만: 총 11건(13.9% 차지)으로, 기타 3건, 경제 2건, 보건 2건, 교통 1건, 문화 1건, 복지 1건, 환경 1건 순임
 - 3년 이상~5년 미만: 총 41건(51.9% 차지)으로, 복지 15건 보건 8건, 환경 7건, 기타 5건, 체육 3건, 경제 2건, 문화 1건 순임
 - 5년 이상: 총 27건(34.2% 차지)으로, 복지 26건, 문화 1건 순임
- 총 42건의 복지 분야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간은 대부분 3년 이상이며 이 중 5년 이상이 26건으로 61.9%를 차지함. 따라서 복지 분야의 민간위탁성과 평가 시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음
 - 5년 이상 26건(61.9%), 3년 이상~5년 미만 15건(35.7%), 3년 미만 1건(2.4%)

[표 2-10] 민간위탁 사무 사무분야별 총기간 현황(어린이집 제외)

(단위: 건, (%))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미만	5년 이상	총합계
경 제	2 (50.0) (18.2)	2 (50.0) (4.9)		4 (100.0) (5.1)
교 통	1 (100.0) (9.1)			1 (100.0) (1.3)
기 타	3 (37.5) (27.3)	5 (62.5) (12.2)		8 (100.0) (10.1)
문 화	1 (33.3) (9.1)	1 (33.3) (2.4)	1 (33.3) (3.7)	3 (100.0) (3.8)
보 건	2 (20.0) (18.2)	8 (80.0) (19.5)		10 (100.0) (12.7)
복 지	1 (2.4) (9.1)	15 (35.7) (36.6)	26 (61.9) (96.3)	42 (100.0) (53.2)
체 육		3 (100.0) (7.3)		3 (100.0) (3.8)
환경	1 (12.5) (9.1)	7 (87.5) (17.1)		8 (100.0) (10.1)
총합계	11 (13.9) (100.0)	41 (51.9) (100.0)	27 (34.2) (100.0)	79 (100.0) (100.0)

민간위탁 사무 분야별 총위탁금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업 123건을 제외한 79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총 위탁금 합계는 113,948 백만원

[표 2-11] 민간위탁 사무 분야별 총위탁금 현황

(단위: 건, (%))

구 分	1억 미만	1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없음	총합계
경 제		3	1				4
교 통				1			1
기 타		4	2			2*	8
문 화		3					3
보 건		6	4				10
복 지	8	23	8	2		1***	42
체 육			3				3
환경		2	2	2	1	1***	8
총합계	8 (10.1) (100.0)	41 (51.9) (100.0)	20 (25.3) (100.0)	5 (6.3) (100.0)	1 (1.3) (100.0)	4 (5.1) (100.0)	79 (100.0) (100.0)

주*: (사업명) 광고물 등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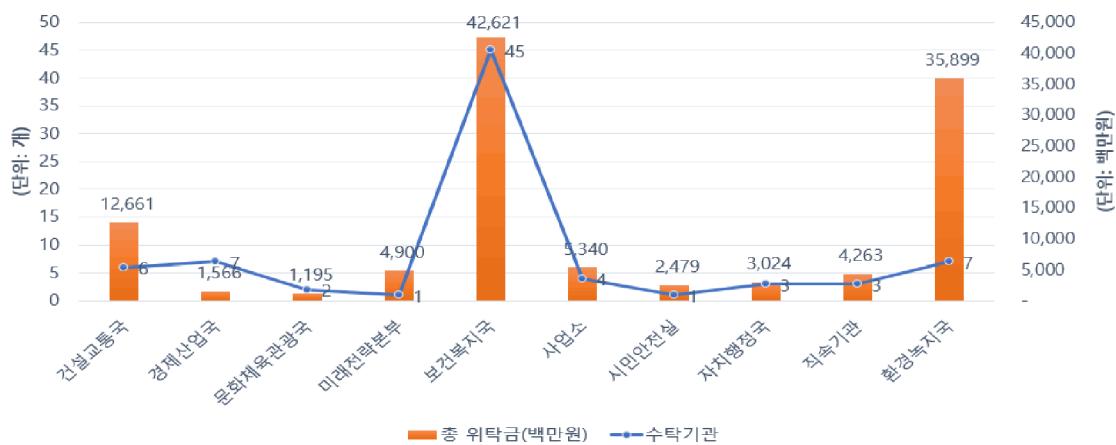
주**: (사업명) 종촌 노인주간보호센터

주***: (사업명) 충광농원가축분뇨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표 2-12]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총 위탁금(실국별 합계, 2023년 1월 2일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실국 구분	수탁기관 수	총 위탁금 합계
건설교통국	6	12,661
경제산업국	7	1,566
문화체육관광국	2	1,195
미래전략본부	1	4,900
보건복지국	45	42,621
사업소	4	5,340
시민안전실	1	2,479
자치행정국	3	3,024
직속기관	3	4,263
환경복지국	7	35,899
총 합계	79	113,948



- 위탁금이 0원인 사업은 총 4건으로, 기타 2건, 복지 1건, 환경 1건임
- 총위탁금 1억 이상~10억 미만 사업은 41건으로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 79건의 약 51.9%를 차지함
 - 그 뒤를 이어, 10억 이상~50억 미만 25.3%(20건), 1억 미만 10.1%(8건), 50억 이상~100억 미만 6.3%(5건) 등의 순으로 분석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업 123건의 경우, 다른 일반 민간위탁 사무와 달리, 위탁금 지급 방식이 상이하여 제외하고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업의 경우, 각각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유아 보육료(국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 자체) 등을 각각의 어린이집 월별 변화 (재원아동 수, 보육교직원 수 등)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운영비를 일괄 지급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타 민간위탁 사무 위탁금 지급 방식과 상이함
- (실국별 총 위탁금 현황)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수가 가장 많고, 위탁금 규모도 가장 큼

민간위탁 근거1)

[표 2-13] 민간위탁 법적 근거 현황(분야별)

(단위: 건, (%))

민간위탁 근거	상위법령				개별 조례 only	민간위탁* only	개별조례+ 민간위탁*	총합계
	개별법령	법령+ 개별조례	법령+ 개별조례+ 민간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별조례				
경제					2 (50.0) (10.5)	2 (50.0) (40.0)		4 (100.0) (5.1)
교통					1 (100.0) (5.3)			1 (100.0) (1.3)
기타					8 (100.0) (42.1)			8 (100.0) (10.1)
문화		1 (33.3) (3.7)		1 (33.3) (100.0)	1 (33.3) (5.3)			3 (100.0) (3.8)
보건	4 (40.0) (20.0)	2 (20.0) (7.7)	2 (20.0) (40.0)		2 (20.0) (10.5)			10 (100.0) (12.7)
복지	15 (35.7) (75.0)	20 (47.6) (76.9)			5 (11.9) (26.3)	1 (2.4) (20.0)	1 (2.4) (33.3)	42 (100.0) (53.2)
체육		2 (66.7) (7.7)	1 (33.3) (20.0)					3 (100.0) (3.8)
환경	1 (12.5) (5.0)	1 (12.5) (3.8)	2 (25.0) (40.0)			2 (25.0) (40.0)	2 (25.0) (66.7)	8 (100.0) (10.1)
총합계	20 (25.3) (100.0)	26 (32.9) (100.0)	5 (6.3) (100.0)	1 (1.3) (100.0)	19 (24.1) (100.0)	5 (6.3) (100.0)	3 (3.8) (100.0)	79 (100.0) (100.0)

주*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개별법령에 근거한 경우(상위법령)는 아래 3가지로 분석됨

- 상위법령에만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 경우
- 상위법령 및 사업 관련 자치법규(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 경우
- 상위법령 및 사업 관련 자치법규(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업 관련 자치법규(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 경우 : 1건(민간위탁 사무명 :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

1)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임을 밝힘

민간위탁 분야별 수탁기관 현황

○ 분야별 수탁기관 현황분석을 통해 특정 기관의 수탁 집중도를 검토한바, 복지와 보건

분야 민간위탁 사무에 특정 수탁기관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탁 집중도 1순위~3순위) 수탁기관별 민간위탁 사무 수행 건수를 내림차순으로 검토한 결과, (재)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위탁 사무 수탁 건수가 10건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음(1순위). 뒤이어 2순위는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으로 복지분야에서만 7건을 수행 중이며, 3순위는 (사)세종시 장애인부모회 복지 분야 4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각각 보건 분야 4건씩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 중에 있음

[표 2-14] 수탁기관별 민간위탁 사무 수행 현황

(단위: 건 / 총합계 내림차순)

수탁기관명	경제	교통	기타	문화	보건	복지	체육	환경	총합계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10			10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7			7
(사)세종시 장애인부모회						4			4
세종충남대학교병원					4				4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				4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			3
(사)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협회			2						2
(사)한국 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2			2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2			2
코오롱글로벌(주)							2		2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1			1			2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1			1
(사)삼동 청소년회						1			1
(사)세종 장애인단체 연합회						1			1
(사)세종YWCA						1			1
(사)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1			1
(사)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				1					1
(사)한국교통장애인세종시협회						1			1
(사)한국석면안전협회						1			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1								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외 1개 기관	1								1
(자)세종주거복지센터						1			1
(재)한국YMCA 전국연맹유지재단 세종 YMCA						1			1
계룡건설산업(주)							1		1
네이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1			1
다정동 주민자치회			1						1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1				1
두잉지프로젝트				1					1
브니엘네이처(주)							1		1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 자립생활협회						1			1
사회복지법인 세종행복복지재단						1			1

수탁기관명	경제	교통	기타	문화	보건	복지	체육	환경	총합계
새롬동 주민자치회			1						1
세종도시교통공사		1							1
세종문화원				1					1
세종상공회의소	1								1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1			1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1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						1
세종환경교육센터								1	1
엔백(주)								1	1
영농조합법인 총광								1	1
(주)두현이엔씨								1	1
(주)에코비트워터								1	1
(주)윙윙			1						1
(주)케이티씨에스			1						1
(주)파라마운트매니지먼트							1		1
한국무역협회 외 1개 기관	1								1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1				1
총 합 계	4	1	8	3	10	42	3	8	79

2) 사무 유형별 민간위탁 추진 현황 분석

사무 유형별 분류 개요

-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무 유형 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기능과 사무 특성에 따라 구분함
 - 기능에 따른 분류 사례는 전라북도가 있으며,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 산업으로 구분함
 - 또한 사무 특성에 따른 분류 사례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으며, 서울 시의 경우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과 자립형(예산지원 없는 사무 운영)으로 구분하였고, 제주도의 경우 중간지원조직형, 사무위탁형, 시설운영형, 환경시설 운영형, 행사개최형/단순지원형으로 구분함
 - 이외에도 감사원에서 수행한 국가 민간위탁 사무 유형은 공공시설, 공공안전,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공원 관리 및 오락, 문화 및 예술, 일반행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 유형은 관리운영, 교육훈련, 보상지원, 시험관리, 신고등록, 심의추천, 안전검사, 안전인증, 인증검사, 정보관리, 제작공급, 평가공시, 확인조사임
 - 이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대부분 민간위탁 사무를 특성에 따라 구분함을 알 수 있음

[표 2-15] 민간위탁 사무 유형 분류

구 분	분류 방식	사 무 유 형
전라북도	기능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산업
서울특별시	사무 특성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자립형(예산지원 없이 사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특성	중간지원조직형, 사무위탁형, 시설운영형, 환경시설운영형, 행사개최형 /단순지원형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	사무 특성	공공시설, 공공안전,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공원 관리 및 오락, 문화 및 예술, 일반행정
감사원 국가 민간위탁 사무	사무 특성	관리운영, 교육훈련, 보상지원, 시험관리, 신고등록, 심의추천, 안전 검사, 안전인증, 인증검사, 정보관리, 제작공급, 평가공시, 확인조사

- 기존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감사원의 사무 유형 분류를 토대로 세종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유형을 크게 사무위탁형과 시설운영관리형으로 제안함
 - 사무위탁형 : 안전점검, 등록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순업무
 - 시설운영관리형 : 보건복지형, 문화체육형, 환경시설형, 기타

유형별 현황

- 민간위탁 사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2건의 위탁사무 중 사무위탁형 24건 (11.9%), 시설운영관리형 178건(88.1%)으로 시설운영관리형의 비중이 높음
 - 각 사무 유형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무위탁형 내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건 (5.9%), 단순업무 9건(4.5%), 등록관리 2건(1.0%), 안전점검 1건(0.5%) 순임
 - 시설운영관리형 내에 보건복지형 162건(80.2%), 환경시설형 8건(4.0%), 문화체육형 5건(2.5%), 기타 3건(1.5%) 순임
 - 이같은 현황은 보건복지형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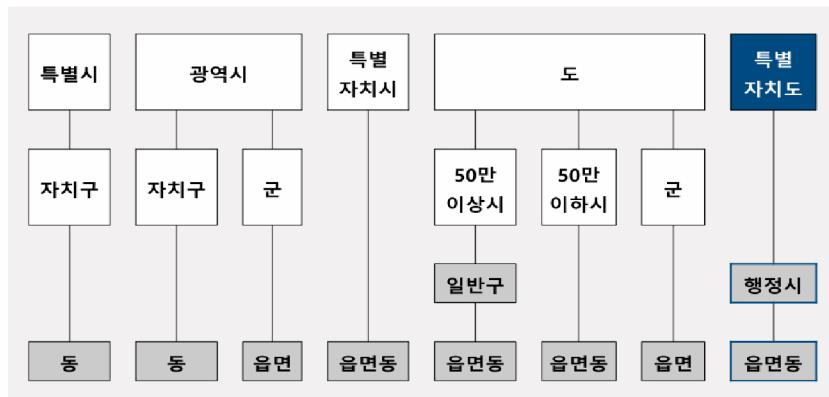
[표 2-16] 민간위탁 사무 유형별 현황

대구분	소구분	사무(수)	사무(대구분 내 비율)	사무(전체 건수 대비 비율)
사무위탁형		24	-	11.9
	단순업무	9	37.5	4.5
	등록관리	2	8.3	1.0
	안전점검	1	4.2	0.5
	프로그램 및 서비스	12	50.0	5.9
시설운영관리형		178	-	88.1
	기타	3	1.7	1.5
	문화체육형	5	2.8	2.5
	보건복지형	162	91.0	80.2
	환경시설형	8	4.5	4.0
총합계		202		

3. 정책환경 진단

1) 행정체계의 특징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단층제이기 때문에 사무 집행 과정에서 특수성이 존재함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층제 구조를 지니며, 예외적으로 단층제를 운영하는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임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현황〉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체계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도농복합 특성을 지닌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사무도 통합하여 관장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짐



자료 : 금창호 외(2016),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그림 2-2] 광역자치단체 유형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자치단체-읍·면·동이 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대부분을 수행하며,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 역시 기초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
- 아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 실태를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금창호 외., 2016)

[표 2-17]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 실태

구 분	내 용	
국가사무	국가사무	
광역사무	특별시	광역사무(자치구 위임사무 포함)
	광역시	광역사무(자치구 위임사무 포함)
	자치시	광역사무+기초사무
	도	광역사무
	자치도	광역사무+기초사무+특례사무
기초사무	50만 이상	기초사무+대도시 특례사무
	일반시	기초사무
	군	기초사무
	자치구	기초사무-본청 위임사무

자료 : 금창호 외(2016),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표 2-18] 광역사무 및 기초사무 내용

광역사무	기초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사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사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사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사군 및 자치구 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사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2개 이상의 사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자료 : 금창호 외(2016),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 단층제 특성으로 인한 사무 집행의 한계는 민간위탁방식의 사무 운영을 통해 보완 가능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와 읍·면·동의 구조 아래 대부분의 사무 집행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특화된 사무기획 역량이 약화될 수 있음
- 동시에 읍·면·동이 기존의 기초사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 등의 대안을 통해 사무집행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조직·인력 현황

- (세종시 본청 내 민간위탁 추진 관련 조직 현황) 세종시 본청 내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부서 인력 중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담당 사무관 외에 한 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 관리와 더불어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관리도 담당하고 있음

[표 2-19] 세종시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부서 인력 및 업무 현황

직 위	주 요 업 무
조직관리담당	조직관리담당 업무 총괄
주무관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기준인건비, 증기기본인력,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 직무파견(결원보충) 등
주무관	정원관리, 조직개편 등(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읍면동), 읍면동 기능개편, 사무위임, 사무전결, 기간제근로자 등
주무관	정원관리, 조직개편 등(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민간위탁 사무, 위원회 관리, BRM 운영·관리 등

자료 : 세종시청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검색일: 2023년 5월 11일

3) 예산 현황

- (세종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부서 예산 현황)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사무관리비(통계목)로 1,880,000원(2022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
 - 회계명 : 일반회계
 - 세부사업명 : 조직관리운영
 - 분야 : 일반공공행정
 - 통계목 : 사무관리비
 - 조직관리운영 사업 예산현액 11,900,000원 중 15.8% 차지(세종특별자치시 재정정보 통계 지출내역 공개자료 참조 <https://www.sejong.go.kr/>)

4) 정책환경 진단의 시사점

-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은 단층제 행정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무 추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때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큰 사무이거나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의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 사무 등에 민간위탁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단층제 행정체계가 가진 세종시 행정조직의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사무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직·인력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함
- 2023년 1월 기준,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 위원회’ 예산에 그침. 향후 조직담당 부서가 종합적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함
 - 조직·인력이 필요한 부분 예시 : 현재 세종시 정책기획관 조직담당 부서 담당자를 충원하는 방식 또는 외부 공공기관 대행을 통해 평가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조직·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가능함
 -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외부 공공기관 대행 평가체계 운영 시 예산(출연금 등) 또는 용역계약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함

III. 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사례 검토

1. 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현황

- 성과평가 용역 실시 지자체: 서울, 대구, 인천, 경기(일부 사무), 충북도, 제주도
- 지자체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성과평가 추진 지자체: 부산(부산복지개발원과의 협력 체계 마련), 제주도(제주연구원)
-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
 - (사례 선정 이유) 서울특별자치시: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한하여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
 - (사례 선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연간사업비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한하여 성과평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2023년부터 제주연구원에 공공기관 대행 성과평가를 진행
 - (사례 선정 이유) 전라북도: 성과평가를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인 광역도

[표 3-1] 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방식

구 분	성과평가방식		비 고
서울시	<p>성과평가 용역 실시(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 : 평가지표마련 ⇌ 서면평가·현장실사 ⇌ 평가결과 검증 ⇌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 관리</p>		총괄부서
부산시	지표개발	부산복지개발원(2개지표: ① 신규, 재위탁, ② 재계약)	
	성과평가단	주관부서 구성(부산복지개발원 인력풀 활용)	주관부서
	평가결과	의회보고, 홈페이지 공고	
대구시		성과평가 용역 실시	총괄부서
인천시		성과평가 용역 실시	총괄부서
광주시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대전시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울산시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경기도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단, 일부 사무를 선정하여 3년 동안 외부 평가(위탁)	총괄부서 주관부서
강원도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충북도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충남도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전북도	성과평가 용역 실시		총괄부서
전남도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경북도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경남도		주관부서(사업부서) 자체 추진	주관부서
제주도	<p>(2022년까지) 성과평가용역(연간사업비 1억원 이상) (2023년부터) 제주연구원에 공공기관 대행</p>		총괄부서

2.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사례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추진 개요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정해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명시함
-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로 함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표 3-2]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도 근거

조례 및 규칙	내 용
조례 제18조 (종합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실시함
 - 민간위탁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3항에 의거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민간 위탁 성과평가 대상을 연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무에 한정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서울특별시, 2022)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종합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3]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연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무(단, 필요할 경우 종합성과평가 실시 가능)
평가주기	위탁 기간 내 1회(만료 90일 이전)
평가시기	매년 2월 ~ 9월 말. 총 3회
평가주관	전문평가기관
평가내용	공통분야와 개별분야, 사용자 만족도 평가, 감점사항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 추진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주요 비위행위 발생 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²⁾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 평가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활용 * 재계약 여부 및 위탁 기간 등의 인센티브 ·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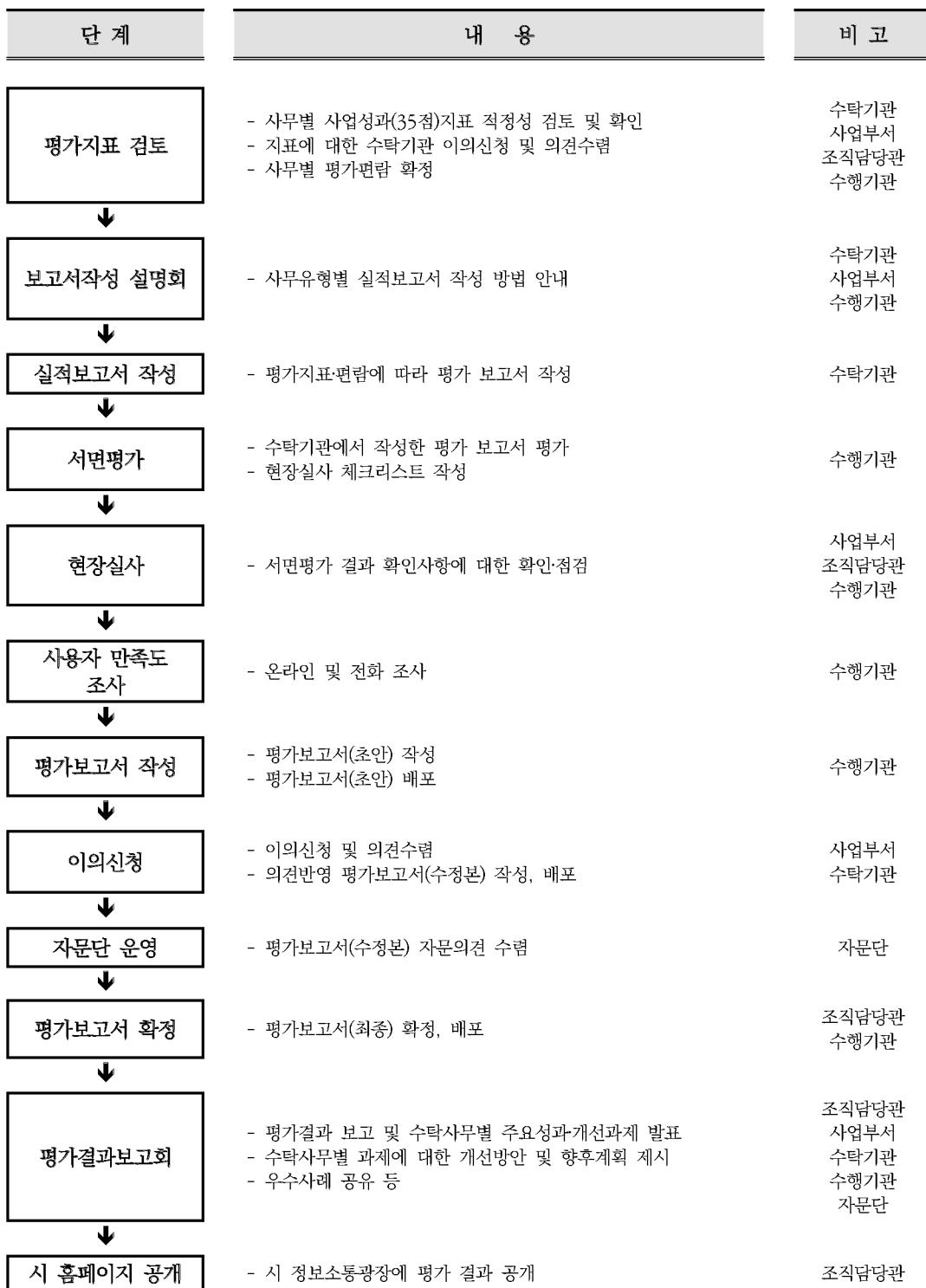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09~112쪽

2) 주요 비위행위 : 민간위탁 지침 상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해야 하는 경우 중 일부 준용

-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별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성과평가 절차 및 대상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자료: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13쪽

[그림 3-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

- 민간위탁 성과평가 전체 기간은 매년 2월부터 9월 말까지이며, 각 민간위탁 사무별 평가 시기를 3차례로 구분함

[표 3-4]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시기(2022년 기준)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무 수	19	35	7
평가일정	'22년 2. 28. ~ 4. 22.	'22년 3. 11. ~ 6. 28.	'22. 6. 17. ~ 9. 30.

자료 : 서울특별시(2022), 〈제1~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2022)〉

- 민간위탁 유형은 크게 예산지원형과 자립형으로 구분되며, 예산지원형은 시설형 위탁과 사무형 위탁으로 세분화됨

- 예산지원형은 예산지원을 통해 사무를 운영하는 유형으로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시설형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없이 사무만 위탁하는 사무형 위탁으로 구분됨
- 자립형은 예산지원없이 사무를 운영하는 유형임

[표 3-5]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유형

증분류	소분류	정 의
예산지원형	예산지원을 통해 사무 운영	
	시설형 위탁	행정재산(市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위탁 수반
	사무형 위탁	행정재산(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위탁 없이 사무만 위탁
자립형	예산지원 없이 사무 운영	

자료 : 서울특별시(2022), 〈제1~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2022)〉

3)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분야, 개별 분야, 사용자 만족도 평가, 감점사항으로 구성됨
 - 공통 분야는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 수준 등을 평가함
 - 개별 분야는 사무별 특성에 맞게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개별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함
 - 감점사례는 임금체불, 세금체납,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등 8개 지표로 구성됨

[표 3-6] 서울특별시 성과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공통 분야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의사소통 노력도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개별 분야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수준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정책준수 노력도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사용자 만족도	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 이행노력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감점사례 ※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만족도 제고노력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등)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자료 : 서울특별시(202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223쪽

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추진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사무로 정해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1항에 근거하여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의 범위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표 3-7]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도 근거

조례 및 규칙	내 용
조례 제23조(종합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	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 <2023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쪽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종합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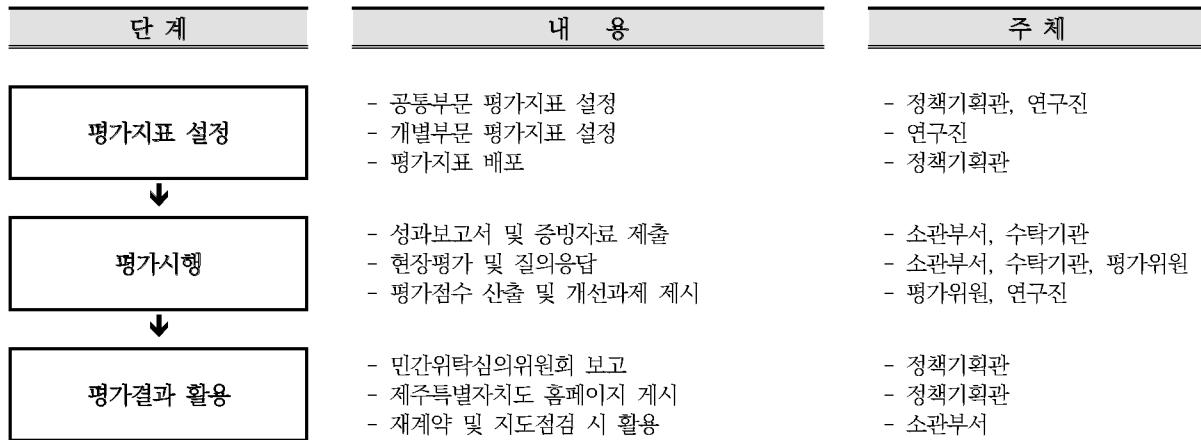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무 *법령이나 조례상 별도 평가가 있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평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기간 내 1회(만료 60일 이전)
평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 11월, 총 4회
평가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제주연구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유형별 공통지표 및 개별지표 평가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행 시 평가위원이 평가점수 산출 및 사무별 성과 및 개선과제 제시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평가위원의 현장 및 서면평가 실시 • 결과 종합 후 평가점수 산출 및 개선과제 제시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적정성 심의 반영 등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 <2023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쪽

민간위탁의 절차 및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 설정, 평가시행, 평가결과 활용의 3단계로 진행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 <2022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17쪽.

[그림 3-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전체 기간은 매년 2월~11월로, 각 민간위탁 사무별 평가 시기를 4차례로 구분하고 있음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시기(2023년 기준)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사무 수	8	14	17	11
평가일정(안)	'23. 2월~3월	'23. 4월~6월	'23. 7월~9월	'23. 10월~11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 <2023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3쪽.

- 민간위탁 사무는 크게 중간지원조직형, 사무위탁형, 도민시설운영형, 환경시설운영형, 행사개최형/단순지원형으로 구분됨

[표 3-1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 유형

구 분	정 의
중간지원조직형	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과 행정기관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의 운영 사무
사무위탁형	민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무
도민시설운영형	지자체 소유의 도민이용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무
환경시설운영형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무
행사개최형/ 단순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또는 정기성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는 사무 -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는 단순 위탁 사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 <2022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18~19쪽.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부문과 개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음
- 신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중 공통 부문은 사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예산 관리(예산집행률, 예산집행체계), 인력관리(인력관리), 평가환류체계(소관부서 평가 환류, 내부관계자 평가환류)임
 - 공통 부문 지표 측정방식은 예산집행률을 제외하고 모두 정성평가임
- 신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중 개별 부문은 추진실적, 코로나19 대응, 이용자 만족도 조사임
 - 개별 부문 지표 측정방식은 추진실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진행하는 반면, 나머지 지표들은 정성평가임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부문	항목	지표	측정	내 용
공통 부문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의 협약에 기초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 계획서상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구체적 설정도
	예산관리	예산집행률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
		예산집행체계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인력관리	인력관리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관리체계 마련 및 준수여부
	평가환류 체계	소관부서 평가 · 환류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의 지도점검 시행 및 결과 반영
		내부관계자 평가 · 환류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자의 사업 내용 및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인지정도 및 의지 • 내부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결과반영
개별 부문	추진실적	추진실적	정량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실적 향상 정도 •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을 정도
	코로나 19 대응	코로나 19 대응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노력을 평가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 〈2022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21쪽.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는 사무유형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 중간지원 조직형, 사무위탁형, 도민시설 운영형은 사업계획 20%, 예산관리 10%, 인력관리 15%, 평가환류체계 15%임
 - 환경시설 운영형은 사업계획 15%, 예산관리 15%, 인력관리 15%, 평가환류체계 15%임

- 행사개최형/단순지원형은 사업계획 20%, 예산관리 20%, 평가환류체계 20%임
(인력관리 가중치 없음)
- 개별 부문인 추진실적, 코로나 19 대응, 이용자 만족도 지표는 모든 사무 유형에 동일하게 40%, 5~10%(해당사업에 한해), 5~10%(해당사업에 한해)임

[표 3-1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및 배점

부문	평가항목	사무유형				
		중간지원 조직형	사무위탁형	도민시설 운영형	환경시설 운영형	행사개최형/ 단순지원형
공통부문	1. 사업계획 1.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20)	20 (20)	20 (20)	15 (15)	20 (20)
	2. 예산관리 2.1. 예산집행률 2.2. 예산집행체계	10 (5) (5)	10 (5) (5)	10 (5) (5)	15 (5) (10)	20 (10) (10)
	3. 인력관리 3.1. 인력관리	15 (15)	15 (15)	15 (15)	15 (15)	-
	4. 평가·환류 4.1. 소관부서 평가·환류 4.2. 내부관계자 평가·환류	15 (5) (10)	15 (5) (10)	15 (5) (10)	15 (5) (10)	20 (10) (10)
	5. 추진실적	40 (20-40)	40 (20-40)	40 (20-40)	40 (20-40)	40 (20-40)
	6. 코로나 19 대응			해당 사업 한 (5-10)		
	7. 이용자 만족도			해당 사업 한 (5-10)		
총점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2), 〈2022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26쪽.

3) 전라북도

민간위탁 추진 개요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행정관여 범위 축소, 행정참여기회 확대,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함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 전라북도의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전라북도 도지사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 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또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 1항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표 3-13] 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도 근거

조례 및 규칙	내 용
조례 제13조(운영성과평가)	<p>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종합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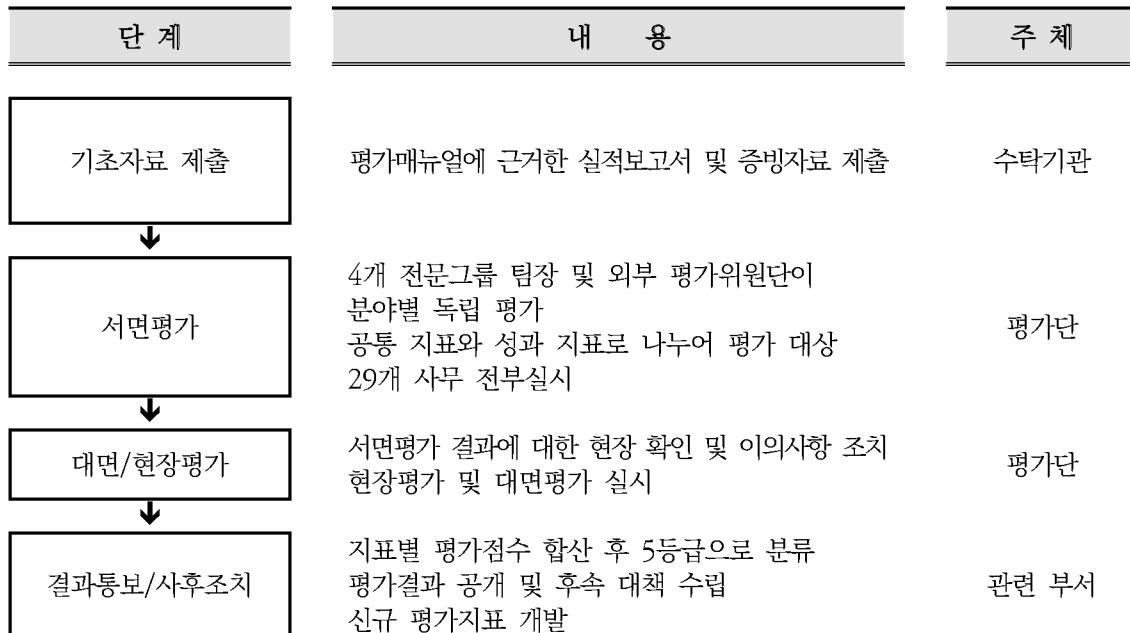
[표 3-14] 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전년도 완료된 민간위탁 사무 *법령이나 조례상 별도 평가가 있는 사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주기	별도 규정 없음
평가시기	1회 실시
평가주관	외부 연구위탁
평가내용	(공통)사업계획, 리더십, 조직 및 인력, 재무예산관리, 평가 및 환류체계 (성과지표)사무수탁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감안 정량지표 위주 핵심성과평가
평가방법	공통지표 및 기관별 사무평가에 의거 평가 평가등급 S-D로 부여
결과활용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자료 : 전라북도(2021), <2021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6쪽

민간위탁의 절차 및 대상

- 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기초자료 제출, 서면평가, 대면/현장 평가, 결과통보/사후조치의 4단계로 진행됨



자료 : 전라북도(2021), 〈2021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7쪽

[그림 3-3] 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

- 민간위탁 사무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산업의 4개 분야로 구분함

[표 3-15]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유형별 예시(2021년 기준)

구분	예시
일반행정	전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문화관광	전라북도 문학관 운영,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보건복지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운영, 전북 광역치매센터 운영
경제산업	전북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희망센터 관리 운영

자료 : 전라북도(2021). 〈2021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3-4쪽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 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부문과 개별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중 공통 부문은 가중치 30점으로 사업계획, 리더십, 조직 및 인력, 재무예산관리, 평가·환류체계임

-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중 성과지표 부문은 각 기관별로 제시됨 또한 민간위탁 성과 평가는 S-D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함
 - 등급별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평가결과 미흡(C)이나 부진(D)은 없는 경우도 있음³⁾

[표 3-16] 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부문	항 목	지 표	내 용
공통 부문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여부 • 세부사업 혹은 실행과제의 목표부합성과 구체성 • 과업지시서(혹은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의 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사무개선노력과 실적 • 전년도 민간위탁 사무 평가결과 이행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체계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	인력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담당인력의 전문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수립 및 이행 • 예산집행기준과 절차의 준수 등 도덕적 해이 점검
	재무예산관리	도 감사 및 정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감사 결과 • 도 정산검사 결과
		성과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 자체 성과평가의 시행 및 결과 활용
성과 지표			각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

자료 : 전라북도(2021). <2021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34쪽

3) 2018년·2020년·2021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D(부진) 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은 없었으며, 2019-2020년에는 C(미흡) 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이 없었음

3.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성과평가 사례 종합

사례 요약

-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전라북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제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가대상은 서울특별시가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전라북도의 경우 사업비 하한선 기준이 없음
 - 평가주기의 경우 모든 지역이 위탁 기간 내 1회 평가를 실시하며, 서울특별시가 위탁만료 90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평가를 마무리하며, 전라북도의 경우 성과평가 기간 만료 규정이 없음
 -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공통분야와 개별분야로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통과 개별분야 이외에도 사용자 만족도 평가와 감점사항을 두고 있음
 - 평가주관은 전문평가기관 또는 외부위탁으로 실시함. 서울특별시(한국산업관계 연구원)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의 경우 평가과정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 및 위탁으로 실시함
 - 평가방법은 크게 평가계획과 평가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우선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들 모두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평가방식은 모두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짐
 - 평가결과는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들 모두 홈페이지 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무의 개선 및 패널티,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 반영 등에 활용됨

사례 시사점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방안으로서 성과평가 전반을 공공기관 위탁 또는 연구 용역의 형태로 진행함
- 위의 세 사례 모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관리체계 및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구 용역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주특별 자치도의 경우 공공기관인 제주연구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제주연구원은 성과평가지표 선정 시기부터 참여하여 성과평가의 합리성·공정성을 제고함
- 사례 지역 모두 사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위탁사무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세 사례 모두 민간위탁 사무를 기능 또는 운영 형태로 구분하여 개별 성과지표를 적용함
 - 서울특별시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자립형(예산지원 없이 사무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 중간지원조직형, 사무위탁형, 시설운영형, 환경시설운영형, 행사 개최형/단순지원형
 - 전라북도 :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산업
 - 이같은 방식은 민간위탁 사무에 따라 성과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 내용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함임. ex) 시설 운영의 경우 시설 운전 및 환경 관리 등이며,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상담 대상자·일자리 알선 수 등임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대상 사무의 사업비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낮추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사무의 사업비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함
 - 세종시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 중 1억 미만이 총 8건이며 모두 복지 분야 사무임
 - 민간위탁 사무 중 사업비가 작은 사무는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등 단순 사무위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시 전문가 풀 구성 및 평가지표 설정 방식을 공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는 재계약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이때 전문가 풀을 구성할 때 지역 내부연구원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내·외부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중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해야 함
 -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과정 초반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성과평가지표를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에 맞게 설계하고 수탁기관 대상 컨설팅을 시행하여 제대로 이해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는 환류 체계를 통해 성과 달성을 이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수의 연구자들은 성과평가 결과가 환류되어 민간위탁이 의도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돋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함(강병준 외., 2015; Liu et al., 207; Yang et al., 2010)
 -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는 환류 과정을 통해 마무리되어야 초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 절차 내에 환류 과정을 설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표 3-17] 서울 · 제주 · 전북 민간위탁 성과평가 요약

구 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무 *단, 필요할 경우 종합성과평가 실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무 *법령이나 조례상 별도 평가가 있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완료된 민간위탁 사무 *법령이나 조례상 별도 평가가 있는 사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기간 내 1회 (만료 90일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기간 내 1회 (만료 60일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규정없음
평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9월 말. 총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11월. 총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실시
평가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평가기관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위탁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분야와 개별 분야, 사용자 만족도 평가, 감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유형별 공통지표 및 개별지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사업계획, 리더십, 조직 및 인력, 재무예산관리, 평가 및 환류체계 (성과지표)사무수탁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감안 정량지표 위주 핵심성과평가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추진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주요 비위행위 발생 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시행 시 평가위원이 평가점수 산출 및 사무별 성과 및 개선과제 제시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평가위원의 현장 및 서면평가 실시 결과 종합 후 평가점수 산출 및 개선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지표 및 기관별 사무평가에 의거 평가 평가등급 S-D로 부여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평가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활용 *재계약 여부 및 위탁 기간 등의 인센티브·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적정성 심의 반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IV.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1.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개요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2가지 제안

- 지금까지 살펴본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둘러싼 정책환경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서울, 제주, 전북) 민간위탁 사무 평가 사례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세종시의 성과평가 모델(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표 4-1] 성과평가 방안별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공공기관 위탁 (지자체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과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 수행까지 종합적 관리 가능통합관리로 평가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체계적 평가지표 마련, 다양한 평가자 인력풀 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부서의 지도·감독 의무 및 책임성 저하 우려세종시 위탁사무의 대부분은 복지 분야 및 시설 유지·관리 사무로 평가 한계
〈제2안〉 주관부서 (사업부서) 자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관부서의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성과평가 책임성, 효율성 제고위탁 시점부터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적극적인 위탁사무관리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가지표 마련, 평가자 구성 시 부서의 혼란* 우려*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평가자 선정기준 부서별 상이 등담당부서의 업무량 증가

-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성과평가 방안 중 **〈제1안〉 공공기관 위탁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사무관리를 위해서는 ①성과목표 및 지표선정의 타당성과 ②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기반하여 제시한 두 가지 안을 평가하였을 때, 먼저 〈제2안〉인 주관부서 자체 추진의 경우, 성과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자기평가의 문제로 인한 객관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추진의 타당성이 낮음**
- 반면, 〈제1안〉인 공공기관 위탁(대전세종연구원)의 경우, 성과 및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바탕으로 타당한 성과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어서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시 공공기관 대행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표준화된 평가, 책임성과 투명성,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에서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 타당성 논리를 제시하고자 함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시 공공기관 대행위탁의 필요성

○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측면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추진 시, 성과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더불어, 해당 사업(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평가자 구성과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이 부여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온정적 판단 등 비공식적 관계의 개입) 표준화된 평가 추진 측면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공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할 경우, 표준화된 평가체계 마련이 가능함
- 민간위탁 평가체계는 투입(추진체계), 변환(평가의 주체, 목적, 대상, 내용, 절차, 방법, 시기), 산출(서비스 및 환류)을 의미함(강병준 외, 2015:232).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위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
- 사업부서별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결과 해석이 상이 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

- 민간위탁의 추진성과 역시 정부의 책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존재함. 따라서 공공 기관 대행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면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되더라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높은 경쟁 등 평가 및 선정결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김용동, 2011)
- 특히 기존 수탁기관(위탁업체)과 담당 공무원(부서)과의 유대관계 고착화, 기술적·전문성의 독점 등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는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유리한 상황으로 연결되어 계약방식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김동욱, 2016)
- 이로 인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관 및 사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공공 기관 대행을 통해 성과평가 추진 시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춘 평가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전문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음
- 민간위탁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계약관리가 중요하며,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강병준 외, 2015:230). 이는 해당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유지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사항임
- 현재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 하며, 그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
-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하고 단순히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대행의 적절성, 적합성

○ 공공기관 위탁 기관 적합도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무의 다양성,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적합한 기관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가 풀 확보 가능**: 대전세종연구원은 유일한 세종시의 종합연구 수행이 가능한 인력 구성을 갖고 있음(높은 전문성).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 풀 운영에 필요한 내·외부 자원 동원력이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금까지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분야 중 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연계에 필요한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체계를 보유할 경우, 특정 분야에 집중도에 따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함
-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 담보**: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경우,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직접적 사업 수행을 추진하지 않는 유일한 시정연구기관임. 이는 곧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와 지속성 유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 연구실은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시정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연구기관임.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하여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연구 지원 기능) 지속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춘 기관이며, 시와의 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도 가능함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제1안> 추진의 타당성 : 법·제도적 근거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법·제도적 근거로 함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성과 평가를 위탁 만료일 120일 전에 실시해야 함을 규정함
 - 또한 동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

[표 4-2]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도적 근거

법·제도	조 항	내 용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성과평가)	<p>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따라서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모델(안) 중 공공기관 위탁 대행 방식은 「세종 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추진이 타당함

<제1안> 추진 대상 :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우선 적용

- 세종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무로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로 한정함
 -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기능
 -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 비영리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
 - 민간이 운영할 경우 보다 활성화되는 기능
 -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조사기능
- 이들 민간위탁 사무 중 성과평가 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연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음

[표 4-3] 타 지자체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사업 기준

구 분	사 업 기 준
서울특별시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사무
강원도	연간 3억원 이상 사무

-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총 8건으로 전체의 약 17.8%를 차지하며 모두 개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을 수행하고 있음

〈제1안〉 추진 기간: 1년간 3~4회로 나누어 성과평가 진행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주기는 계약 유형인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 기간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난 2022년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2월~4월(61개 사무 중 19개), 3월~6월(61개 사무 중 35개), 6월~9월(61개 사무 중 7개)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함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각 민간위탁 사무마다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년간 3~4회로 나누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제1안〉 평가 내용: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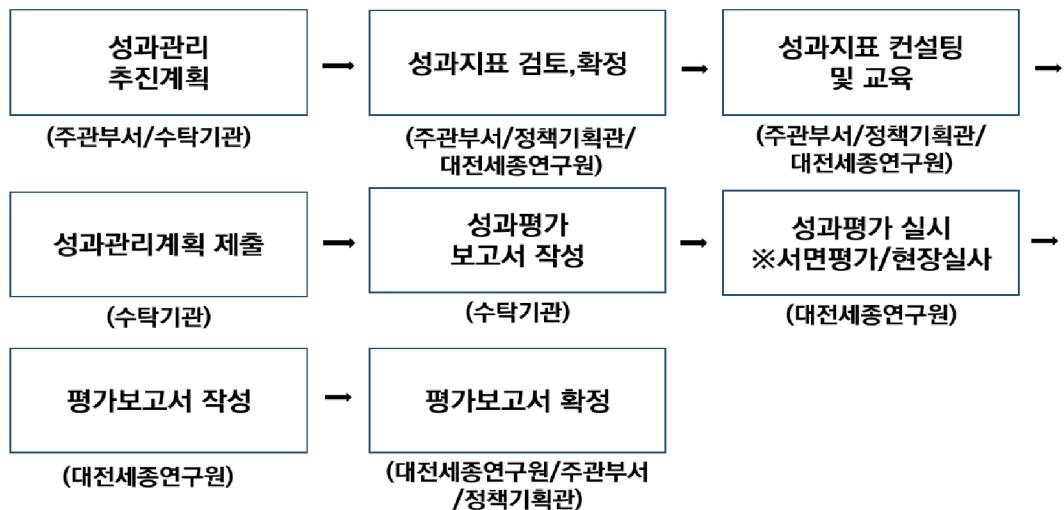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내용은 크게 공통분야, 개별분야, 사용자 만족도 평가, 감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함
- 공통분야는 민간위탁 사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과 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여부 등을 평가함
 - 개별분야는 민간위탁 사무 유형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프로그램 수행 횟수, 수혜자 수, 등록 건 수 등 정량적으로 산출가능한 정량지표와 서비스 질적 수준,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정성지표로 구성함
 - 개별분야는 향후 수탁기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사전컨설팅 및 협의를 통해 사무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적용함
- 사용자 만족도는 공공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무의 경우 시민들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시함

- 민간위탁 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함
 - 성과평가 결과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방식으로 시행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환류를 통해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사무의 개선 및 패널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함
 - 설계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①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평가 시 반영
 - ②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반영
 - ③ 성과평가 결과를 위탁 기간에 적용

[표 4-4]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개요(안)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무 (단, 필요할 경우 종합성과평가 실시 가능)
평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기간 내 1회(만료 120일 이전) *선정/재계약 여부에 따라 평가시기 차등화하여 총 3회 실시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분야(배점: 60) • 개별분야(배점: 40) *사용자 만족도 평가(개별분야 내에서 해당 기관에만 적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 추진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주요 비위행위 발생 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의 보고 및 공개 • 평가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활용 *재계약 여부 및 위탁 기간 등의 인센티브 ·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추진부서(사업부서) 담당자, 수탁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함 • 평가 결과와 더불어 컨설팅과 교육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추진 주체별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지표 검토/컨설팅/성과평가 실시 등을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함



[그림 4-1]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 제안

[표 4-5]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절차(안)

단계	내용	비고
성과관리 추진계획	- 협약체결 후 주관부서가 수탁기관에 요청 - 수탁기관이 성과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주관부서 수탁기관
성과지표 검토·확정	- 개별 평가지표 적정성 검토 및 확정	주관부서 *조직관리팀장 협조 대전세종연구원
성과지표 컨설팅 및 교육	- 성과지표 안내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주관부서 *조직관리팀장 협조 대전세종연구원
성과관리계획 제출	- 수탁기관 개별 성과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탁기관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성과평가 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대전세종연구원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대전세종연구원
만족도 조사	- 온라인 및 전화 조사	수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대전세종연구원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주관부서 수탁기관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대전세종연구원 주관부서 조직관리팀장

2. 예산지원 방식에 관한 정책 제안

- 여기에서는 세종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공공기관 대행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실행 가능한 예산지원 방식 유형을 제안해보고자 함

[표 4-6] 위탁 운영에 따른 다양한 예산 지원 방식 비교

구분	위탁·대행 (공공위탁)	용역계약	출연금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법적 근거	단체장 판단하에 필요시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조례상 보조 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근거 조례*	불필요 (향후,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불필요	불필요 (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필요	필요
의회 동의	불필요	불필요	필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 동의와 함께 진행 가능)	불필요	필요 (재위탁, 위탁개신 중 3억 원 이하 사무 제외)
선정 심의	부서 협의하에 진행 가능함. 선정심의 불필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불필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공모 기간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	필요에 따름	-	3년	3년 이내

* 센터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의 필요 여부를 의미(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의 필요 여부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김기욱 외(2023) 재구성

[표 4-7] 예산 지원 방식의 적합성, 지속성, 내부 구성원 참여도(예상),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사례

구 분	적합성	지속성	내부 구성원* 참여도(예상)	운영 사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수행 사례
위탁·대행 (공공위탁)	○	○	△	×	×
출연금	○	○	△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도시안전연구센터
용역계약	○	△	○	○	여성가족부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 사업(연구용역), 기획재정부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 위탁운영사업
지방보조금	×	×	×	○	세종학진흥위탁사업 (2023년)
민간위탁	×	×	×	×	×

* 컨설팅 참여를 위한 내부 연구위원 및 전문연구원을 의미함(연구책임 또는 센터책임 제외). 겹쳐 방식으로 참여도를 예상한 결과임

- 먼저, 다양한 방식의 위탁 운영 예산지원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공위탁·대행 방식

-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의 법인) 해당하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은 공공위탁 및 대행 기관으로 지정·운영이 가능함
- 공공위탁·대행 방식은 단체장의 판단하에 필요시 추진 가능하며, 부서 협의하에 진행이 가능하여 행정의 신속성, 적시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위탁 및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부재하여 관련 운영 지침 및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단체장의 요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의의 과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출연금 방식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출연금에 성과평가 대행업무 관련 출연금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적합성 높음. 추후 조직(센터)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또는 정책연구)가 필요함
-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내부 구성원(컨설팅을 위한 겸직 구성원을 의미 함)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 (예산 특징) 출연금방식의 경우, 실행예산은 동일함. 센터장 보직자 외 내부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불가한 상황임

※ 출연금 방식 예시: 세종연구실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10.20. 제정)
- 출연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현황
 - 설립일자: 2017.02.17.
 - 설치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701호(소담동, 로이어즈타워 7층)
 - 인원현황: 센터장 1명, 책임연구위원 1명, 위촉연구원 2명
- 주요연혁
 - 2012.01. 대전세종연구원 자체조직, ‘도시안전디자인센터’로 출범
 - 2016.10.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10.20. 제정)
 - 2017.02. 세종시장 공약사항에 따라 세종시 도시안전연구센터 설립
- 출연절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 동의 득하여 출연
 -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 소관부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매년 9월경, 안전정책과,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
 - 매년 10월경 교육안전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용역계약 방식

- 용역계약 방식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무 종합평가에 대한 단기적 추진 방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됨. 다만, 시 편성예산금액과 사업실행 예산이 크게 차이(차감)가 나므로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용역예산을 사업실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편성해야 함
- (예산의 특징) 시 용역수행을 위한 예산편성금액과 실행예산이 상이함. 일차적으로 시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일부 차감(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에도 불구하고)됨. 이차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용역과제 내부 전입금(간접비 귀속) 지침에 따라 계약 금액에서 대부분 30% 내외로 감액됨. 따라서 용역계약금액에 대한 예산편성 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함
- (예산의 특징) 한편, 용역계약방식을 취할 경우, 용역과제에 포함되는 내부 구성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 여러 예산지원 방식 중 내부 구성원 참여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재정적 인센티브 측면) 형태임

○ 지방보조금 방식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의 경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비영리, 공익성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예: 전통문화 진흥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주로 활용되는 지방보조금 방식은 추진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방식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의 경우,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간위탁 방식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예산 지원 방식 검토 시사점)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의뢰할 경우, 공공위탁·대행방식, 출연금 방식과 용역계약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3. 그 외 정책 제안

1) 컨설팅, 교육에 관한 사항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성과평가 대행 업무 위탁 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은 컨설팅 및 교육 업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있어서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집단은 다음과 같음
 - 시 사업담당 부서
 - 수탁기관
 - 수탁 예비(희망) 기관
 - 성과평가 참여 전문가(세종연구실 내부 연구자, 관내·외 전문가 집단)

2) 성과평가 업무 대행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세종연구실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 참여의 지속성을 위한 과제

- 내·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내부)와 비용부담(외부)을 준비해야 함(평가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참여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민간위탁 사무 평가는 전문성을 담보로한 연구 활동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이므로 대전세종연구원의 내부 지침(연구원 성과평가)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책임자 외의 내부인력 활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방식의 경우 또한 내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 구조를 조정하여 기여도 만큼의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간의 적극적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안정적인 행정지원 인력

- 성과평가의 지속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전문평가단 풀 모집, 운영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행정지원 인력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함
 - 현재, 세종연구실 내부 인력(연구직 및 전문연구원, 관리직)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아님

- 또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를 통한 표준화된 성과평가 체계를 위한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석사급 이상의 행정 지원 인력이 필요함
 - 예상 필요 인력 : 센터장 1명(내부 연구위원), 박사급 초빙연구원 1명(성과평가계획 지원, 평가결과 분석, 지표 관리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 석사급 전문연구원 1명 (컨설팅, 교육, 평가단 인력관리)
-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이상)의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상기 언급된 예산지원 방식 중 '공공위탁·대행 및 출연금 방식'이 가장 적합함

성과평가 결과의 기록과 지속적인 환류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 성과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환류, 수탁기관의 역량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사업부서별 성과평가 현장에서는 수탁기관별 증빙자료 관리 방식이 다양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평가자로 하여금 원활한 평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향후,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용 증빙서류가 통합정보시스템 형태로 제공 될 경우, 외부 평가단들의 서류 심사 진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장기적 과제로서 정보축적과 환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바임

중앙부처 차원의 평가를 추진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 체계와의 중복, 중첩의 가능성 검토해야 함

- 일부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피평가자의 경우 평가 지표 자체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음
- 중앙부처 차원의 성과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도 문제 없다는 주장도 나타남
- 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의 성과평가 의도와 방식, 지표는 세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목적성, 구체성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사무별 관련 중앙부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복과 중첩의 가능성이 없음을 피평가자 집단에게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음(중복, 중첩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공지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병준, 윤건, 윤민석(2015),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 금창호 외(2016).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 김기욱 외(2023), 〈(가칭)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부산연구원.
- 김동욱(2016).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대행사업예산 운영현황 분석과 조례정비 방안. 〈정부 회계연구〉, 14(1), 31-53.
- 김용동(2011). 〈민간위탁 시설 운영 평가지표 개발〉. 대전발전연구원.

[부록 표 1-1] 민간위탁 사무 실국별/사무분야별/총기간 현황(어린이집 제외)

(단위: 건, (%))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총합계
건설교통국	2 (33.3) (18.2)	3 (50.0) (7.3)	1 (16.7) (3.7)	6 (100.0) (7.6)
교통	1	.	.	1
기타	.	2	.	2
복지	1	1	1	3
경제산업국	1 (14.3) (9.1)	6 (85.7) (14.6)	.	7 (100.0) (8.9)
경제	1	2	.	3
기타	.	2	.	2
복지	.	1	.	1
환경	.	1	.	1
문화체육관광국	1 (50.0) (9.1)	.	1 (50.0) (3.7)	2 (100.0) (2.5)
문화	1	.	1	2
미래전략본부	1 (100.0) (9.1)	.	.	1 (100.0) (1.3)
기타	1	.	.	1
보건복지국	2 (4.4) (18.2)	18 (40.0) (43.9)	25 (55.6) (92.6)	45 (100.0) (57.0)
보건	2	5	.	7
복지	.	13	25	38
사업소	.	4 (100.0) (9.8)	.	4 (100.0) (5.1)
문화	.	1	.	1
체육	.	2	.	2
환경	.	1	.	1
시민안전실	.	1 (100.0) (2.4)	.	1 (100.0) (1.3)
기타	.	1	.	1
자치행정국	3 (100.0) (27.3)	.	.	3 (100.0) (3.8)
경제	1	.	.	1
기타	2	.	.	2
직속기관	.	3 (100.0) (7.3)	.	3 (100.0) (3.8)
보건	.	3	.	3
환경녹지국	1 (14.3) (9.1)	6 (85.7) (14.6)	.	7 (100.0) (8.9)
체육	.	1	.	1
환경	1	5	.	6
총합계	11 (13.9) (100.0)	41 (51.9) (100.0)	27 (34.2) (100.0)	79 (100.0) (100.0)

[부록 표 1-2] 민간위탁 사무 실국별 사무분야/총위탁금 현황(어린이집 제외, 세부)

(단위: 건, (%))

구 분	1억 미만	1억 이상 ~ 10억 미만	1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없음	총합계
건설교통국		2 (33.3) (4.9)		2 (33.3) (40.0)		2 (33.3) (50.0)	6 (100.0) (7.6)
교통				1			1
						2	2
		2		1			3
경제산업국		6 (85.7) (14.6)				1 (14.3) (25.0)	7 (100.0) (8.9)
			3				3
		2					2
		1					1
환경						1	1
							2
							2
							1
문화체육관광국		2 (100.0) (4.9)					2 (100.0) (2.5)
문화		2					2
							1
미래전략본부			1 (100.0) (5.0)				1 (100.0) (1.3)
기타			1				1
	8 (17.8) (100.0)	24 (53.3) (58.5)	11 (24.4) (55.0)	1 (2.2) (20.0)		1 (2.2) (25.0)	45 (100.0) (57.0)
보건복지국		4	3				7
	8	20	8	1		1	38
사업소		1 (25.0) (2.4)	3 (75.0) (15.0)				4 (100.0) (5.1)
		1					1
			2				2
			1				1
시민안전실			1 (100.0) (5.0)				1 (100.0) (1.3)
기타			1				1
							3
자치행정국		2 (66.7) (4.9)	1 (33.3) (5.0)				3 (100.0) (3.8)
경제			1				1
							2
직속기관		2 (66.7) (4.9)	1 (33.3) (5.0)				3 (100.0) (3.8)
		2	1				3
							3
							3
보건		2	1				3
							3
환경복지국		2 (28.6) (4.9)	2 (28.6) (10.0)	2 (28.6) (40.0)	1 (14.3) (100.0)		7 (100.0) (8.9)
			1				1
		2	1	2	1		6
							6
총합계	8 (10.1) (100.0)	41 (51.9) (100.0)	20 (25.3) (100.0)	5 (6.3) (100.0)	1 (1.3) (100.0)	4 (5.1) (100.0)	79 (100.0) (100.0)

[부록 표 1-3] 민간위탁 법적 근거 현황(실국별)

(단위: 건, (%))

민간위탁 근거	상위법령				개별 조례 only	민간 위탁* only	개별조례 + 민간위탁*	총 합계
	개별법령	법령+ 개별조례	법령+ 개별조례 + 민간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개별조례				
건설교통국		1 (16.7) (3.8)			3 (50.0) (15.8)	1 (16.7) (20.0)	1 (16.7) (33.3)	6 (100.0) (7.6)
경제산업국		1 (14.3) (3.8)			3 (42.9) (15.8)	3 (42.9) (60.0)		7 (100.0) (8.9)
문화체육관광국				1 (50.0) (100.0)	1 (50.0) (5.3)			2 (100.0) (2.5)
미래전략본부					1 (100.0) (5.3)			1 (100.0) (1.3)
보건복지국	18 (40.0) (90.0)	20 (44.4) (76.9)	1 (2.2) (20.0)		6 (13.3) (31.6)			45 (100.0) (57.0)
사업소		3 (75.0) (11.5)				1 (25.0) (20.0)		4 (100.0) (5.1)
시민안전실					1 (100.0) (5.3)			1 (100) (1.3)
자치행정국					3 (100.0) (15.8)			3 (100.0) (3.8)
직속기관	1 (33.3) (5.0)		1 (33.3) (20.0)		1 (33.3) (5.3)			3 (100.0) (3.8)
환경녹지국	1 (14.3) (5.0)	1 (14.3) (3.7)	3 (42.9) (60.0)				2 (28.6) (66.7)	7 (100.0) (8.9)
총합계	20 (25.3) (100.0)	26 (32.9) (100.0)	5 (6.3) (100.0)	1 (1.3) (100.0)	19 (24.1) (100.0)	5 (6.3) (100.0)	3 (3.8) (100.0)	79 (100.0) (100.0)

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록 표 1-4] 경제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탁기관	경제	총합계
경제산업국		3	3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1	1
	세종상공회의소	1	1
	한국무역협회 외 1개 기관	1	1
자치행정국		1	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외 1개 기관	1	1
총합계		4	4

[부록 표 1-5] 교통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탁기관	교통	총합계
건설교통국		1	1
	세종도시교통공사	1	1
총합계		1	1

[부록 표 1-6] 기타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 탁 기 관	기 타	총합계
건설교통국		2	2
	(사)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협회	2	2
경제산업국		2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	1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1	1
미래전략본부		1	1
	(주)윙윙	1	1
시민안전실		1	1
	(주)케이티씨에스	1	1
자치행정국		2	2
	다정동 주민자치회	1	1
	새롬동 주민자치회	1	1
	총합계	8	8

[부록 표 1-7] 문화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 탁 기 관	문 화	총합계
문화체육관광국		2	2
	(사)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	1	1
	두잉지프로젝트	1	1
사업소		1	1
	세종문화원	1	1
	총합계	3	3

[부록 표 1-8] 보건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 탁 기 관	보 건	총합계
보건복지국		7	7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1	1
	세종충남대학교병원	3	3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	3
직속기관		3	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1	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	1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1	1
	총합계	10	10

[부록 표 1-9] 복지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 탁 기 관	복 지	총합계
건설교통국		3	3
	(사)한국석면안전협회	1	1
	(자)세종주거복지센터	1	1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1	1
	경제산업국	1	1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1	1
보건복지국		38	38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1	1
	(사)삼동 청소년회	1	1
	(사)세종 장애인단체 연합회	1	1
	(사)세종YWCA	1	1
	(사)세종시 장애인부모회	4	4
	(사)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1	1
	(사)한국 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2	2
	(사)한국교통장애인세종시협회	1	1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10	10

실국 구분	수 탁 기 관	복 지	총합계
	(재)한국YMCA 전국연맹유지재단 세종 YMCA	1	1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1	1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 자립생활협회	1	1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	1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3	3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6	6
	사회복지법인 세종행복복지재단	2	2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1	1
총합계		42	42

[부록 표 1-10] 체육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 탁 기 관	체 육	총합계
사업소		2	2
	코오롱글로벌(주)	2	2
환경녹지국		1	1
	(주)파라마운트매니지먼트	1	1
총합계		3	3

[부록 표 1-11] 환경 분야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황

실국 구분	수 탁 기 관	환 경	총합계
경제산업국		1	1
	영농조합법인 총광	1	1
사업소		1	1
	(주)두현이엔씨	1	1
	환경녹지국	6	6
	계룡건설산업(주)	1	1
	브니엘네이처(주)	1	1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1
	세종환경교육센터	1	1
	엔백(주)	1	1
	(주)에코비트워터	1	1
총합계		8	8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 (문자동)

042-530-3500
www.dsi.re.kr

비매품/무료

ISBN: 979-11-6075-384-4(93350)